

(별지 제6호 서식)

담당부서							처리기간
담당과장	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(승인)서						5 일
담당자							
연락처							
신상 호							
청대표자성명							
인주소							
설치(사용)장소				통관지	세관명		
수입신고번호				수입신고수리연월일			
적용법조항				사업의종류			
HS번호	폐기대상 물품명	규격	수량	과세가격	관세감면 (분납)액	내국세 감면액	비고
* 폐기 이유 및 폐기 방법				폐기예정연월일		폐기 장소	
<p>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제3항 및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				<p>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폐기신청을 승인하오니 20 . . . 까지 폐기하시고, 폐기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귀하</p>			
* 구비서류 :						수수료	
1. 신청서 1부						없음	

※ **유의사항** : 폐기시에 자연, 생활환경 및 국민보건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폐기장소, 폐기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